

# 퇴직금 규정

제정 1988. 8. 1      개정 1994.12.22  
개정 1989. 3. 1      개정 1998. 3. 1  
개정 1992. 6.19      개정 2000. 3. 1  
개정 1994. 3. 1      개정 2009. 3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지급률) ① 교직원의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임용 후 1년 이내에 사직하는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② 근속기간 계산 결과 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년 해당 지급일수를 월할한다. 다만, 계산후 원 미만의 단수는 버린다.

제4조(퇴직금산정 기준임금) 퇴직금산정 '기준임금'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으로 한다.

제5조(퇴직금계산) ① 퇴직금은 제3조의 지급일수에 퇴직당시의 기준임금을 곱하여 산출한다. 다만, 계산 후 원미만의 단수는 버린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 금액이 관련 법령의 최저 기준에 의한 퇴직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최저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.

제6조(근속기간 계산) ① 근속기간은 임용일로부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.

②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한다.

③ 정직 및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한다. 다만,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당해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.

제7조(퇴직금 지급) 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통화로 지급한다.

② 교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은 관련 법령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.

③ 교직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1992년 6월 1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2. 본 규정 시행전에 채용된 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1994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본 규정 시행전에 채용된 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1994년 12월 22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다만, 포항공과대학에서 포항공과대학교, 학장에서 총장으로의 개정은 1994년 3월 1일 개정,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제6조에 관한 경과조치) 직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은 퇴직전일(휴직중 퇴직할 경우에는 휴직전일)로부터 역산하여 1년간에 지급된 기본급을 그 기간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 법인 퇴직금규정 및 대학 퇴직금규정은 이 규정으로 통폐합한다.

(별표) 퇴직금 지급일수

### 퇴직금 지급일수

근속년수	지급일수	근속년수	지급일수
1	30	16	480
2	60	17	510
3	90	18	540
4	120	19	570
5	150	20	600
6	180	21	630
7	210	22	660
8	240	23	690
9	270	24	720
10	300	25	750
11	330	26	780
12	360	27	810
13	390	28	840
14	420	29	870
15	450	30	900